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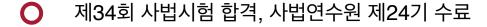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강사 소개

● 구 태 언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석사) Santa Clara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보보호·부정조사 팀장)

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대검찰청 디 지털수사·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등 자문변호사

○ 금융보안연구원 금융보안거버넌스자문위원회 위원(201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금융IT분과) 위원(2014-)

2013 개인정보보호대상 수상, 2012 정보보호대상 수상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사 소개

● 최 윤 상 변호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법학 석사)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김장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변호사
- ロ무법인 민주 변호사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사 소개

● 유 창 하 미국변호사

고려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 최고위과정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LL.M.)

Hudson Advisors Korea ㈜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이사 및 개인정보최고책임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민간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분야 민간자문위원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한국 CPO 포럼 정회원 고려대 방송통신법포럼 정회원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강의 순서



회사의 설립과 운영

회사의 설립

● 스타트업 추진단계

- 사업구상: 관련 법률, 규제 법률의 존재 및 관련 사례 여부 파악
- 지적재산권 등 사전 검토 : 선출원, 등록된 특허 존재 여부 확인
- **사업형태 결정** : 개인사업자, 유한회사, 조합 등
- 멤버 구성: (공동) 창업자 확정, 임직원 구인 / 주주간 계약체결, 근로계약 체결
 -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약정 등 체결

스타트업 설립단계

- 회사설립 : 정관, 법인등기사항 확인
 - 정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보존
- **의사결정 기관 확정** :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사항 구분, 의사록 작성·보존
- 자금 집행: 자금집행시 근거 보존
- 외부투자 : 외부투자 관련한 정부정책 및 법률 검토

- 7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설립

- 회사: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의미
- 분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회사의 목적 및 구성을 고려하여 설립할 회사의 유형을 결정
- 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 상호 정하기('주식회사' 등의 표시가 반드시 필요함)
 - 회사의 목적 결정 :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 4대 사회보험 신고
- 법인설립등기
 - 법무사 대행 (편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중기청 온라인 법인설립 (비용 절감)



● 외부투자 유치

- 개별 계약체결 시 투자금 상환 및 경영관여 관련 사항 검토
- 정부 또는 벤처캐피탈 등에서 지원시 검토 내용
 - 사업의 전망 및 수익성
 - 사업 내용, 회사 지분구조, 계약관계, 인적구성 등의 법적 리스크 검토
- 창업시부터 법률적 리스크를 세심히 검토
- 회사 운영 내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함

● IPO를 위한 정관작성

- 회사의 유형에 따른 절대적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본점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 등

- 9 -

● 계약의 의미와 계약서의 중요성

- 계약이란?
 - 좁은 의미의 계약이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
 - 그러나 스타트 업 단계에서는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회사 간의 계약 체결까지 채권관계의 발생 뿐만 아니라 <u>다양한</u>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됨.
- 계약서의 중요성
 - 계약은 <u>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u>하는 것이 원칙임.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처분문서.
 - 계약서는 계약체결의 여러 당사자 간의 향후 **분쟁 발생을 미리 예방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분쟁해결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즉 계약의 상대방이 스타트 업 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계약서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스타트 업 기업은 계약서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음.
 - 특히 스타트 업 기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계약서는 소송상의 창과 방패의 역할을 수행함.
 - 서면 계약서는 소송상의 공격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방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u>내용을 명확</u>하게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하여야 함.



분쟁해결을 위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 주체의 법적인 성격(개인, 법인)과 정확한 연락처
 -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성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 본)을 첨부하여야 함.
 -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 제기를 위하여 **당사자를 명확**하게 하고, 소장 등 소송서류의 송달 불능 등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
- 명확한 권리, 의무의 규정
 - 권리, 의무의 불분명한 규정은 향후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하도록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어휘를 사용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여야 함.
 - 스타트 업 기업이 계약서 작성에 능숙하지 아니하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거나, **적어도 법조인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일방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시 해결방안 및 구체적인 제재방법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미리 약정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간단한 내용증명 등으로 쉽게 분쟁을 해결.
- 계약서의 체결날짜와 관할합의 등
 - 계약서의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 **관할합의**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 **국외에서 소송을 진행**.

- 11 -

● 사업의 인·허가

- 인·허가의 의미
 - 인가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동의**에 의하여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를 의미.
 - 허가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제한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행정행위.
 - 현재 많은 법률에서 허가·인가·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따라서 창업하는 업종에 따라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야 함. (예: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음식점 등의 영업점에 대한 허가)
- 인·허가의 신청
 -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원칙.
 -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인·허가 신청을 필요로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 **인가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 인·허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플러스 G4B"에서 각 업종별 인·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12 -

인사와 노무 관리

근로계약서의 작성의 필요성 및 주의사항

-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서 전달 의무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자
 - 근로계약서는 10인 이상 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이외에도 단기근로자,파트타임・일용직 근로자등 모두가 작성 및 교부대상이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작성후 전달해주어야함
- 근로조건명시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단속 강화 정책
 -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의무
 - 고용노동부, <u>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u>, 특히 기 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14.8월)
 - 임금체불 형사사건에 있어서 근로감독관·검사에 따라서는 계약서 미체결 역시 함께 고발·기소하는 경우가 있음(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가지 고려 사항
 - 1.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 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날인한후 전달해야
 - 2.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단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 3. 영업비밀보호와 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내용을 명기(장기간의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 14 -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제도

● 제도의 개요 및 요건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병역특례 제도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인력을 제공해주기 위한 제도로 ① 전문연구요원(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과 ② 산업기능요원(3년,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구분
- 병무청은 2013. 11. 다수의 스타트업을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

● 제도의 개요 및 요건

- 정보처리 업종: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며, 등록된 사업장,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일 것
- 게임S/W, 영상게임기제작 업종 : S/W개발, 게임S/W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일 것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선정 탭) 참조

- 15 -

인사노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 인사노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도, '인사노무'는 비영리 업무로 보아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단계별 주의 사항

- ① 채용 준비 단계
 - 채용계획 수립: 적절한 인재 선발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결정 및 안전한 관리계획 수립
 - <mark>주민번호: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수집 금지</mark>(법 제24조의2 신설) / 신체검사: 직무의 특성상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건강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동의를 받아 실시(채용예정업무의 특성에 따라 수집 정보의 종류 및 범위 결정)
- ② 채용결정·고용유지 기간
 - 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예: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작성(이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40조, 동법 시행령 제 106조, 제108조, 제113조 내지 제1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동 시행규칙 서식37 등)

- 16 -

인사노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 인사노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
 - ② 채용결정·고용유지 기간
 -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인력배치 및 이동(전보, 파견, 휴직 등), 후생복지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경우 등
 - 기타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동의 확보
 -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
 - ③ 퇴직 시 주의 사항
 - 퇴직 근로자 개인정보의 파기
 - 퇴직 근로자의 각종 개인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삭제
 -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 퇴직 후 <u>3년간 별도 보관</u>(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퇴직 근로자 경력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관

인사노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 인사노무 관련 Q&A

- ① 신원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입사지원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동의 없이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학력과 자격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 않나요?
 - 업무의 특성상 특정 학력과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동의가 필요 없으나, 그 이외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상시채용시스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탈락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나, 상시채용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서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탈락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④ 인사·급여 등을 위해 재직 중인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u>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것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u>. 다만 주민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가 필요합니다(예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과 같이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 ⑤ 위탁교육 등 외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하는 조치로는 무엇이 있나요?
 - 업무위탁시 법정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하고, 관련 사항을 인트라넷 등을 통해 공지하며, 수탁업체를 관리·감독 하여 야 합니다.
- ⑥ 퇴사 직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여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최소보존기간은 3년 입니다. 다만 경력증명 등을 위해 계속 보관하려고 한다면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 18 -

●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지식재산이란?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
 - 특허: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한 것(관련: 특허법).
 -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표장(관련: 상표법).
 - 디자인: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관련: 디자인보호법)
 - 영업비밀: <u>외부에 공지되지 않고</u>, 정보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해 온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소설, 음악, 연극, 회화,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관련: 저작권법)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특허·상표·디자인 : 국가에 특허·상표·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일정기간(20년·10년·20년) 독점권 인정(예외: 상표는 갱신 가능)
 - 유의점: 선사용자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 기술·상표·디자인 등을 고안하기 전에 이를 확인해야.
 - 중요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침해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회사의 인지도가 상승 할수록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선제적 권리 확보가 필수.
- 저작권: 저작물은 완성 시 등록 없이 저작권이 인정되며 일정기간 독점권 인정(70년, 다만, 프로그램저작물은 등록 필요)
 - 유의점: 저작물 사용 시 다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
 - 중요성: 저작권법은 회사 내 문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침해사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한 독점
 - 유의점: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불가.
 - 중요성: 영업비밀은 기업의 가장 핵심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 스타트업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대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Vs.



- 관련기사: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
g_serial=864084&g_menu=020500&rrf=nv

- 영국 킹닷컴은 국내 게임 개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 저작권 침해 인정시 스타트업 기업은 존폐의 위기
- 예방과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조력 필요

- 22 -

●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의 보호 방안

보안유출사고예방을 위한 지침

- 직원 관리가 가장 중요
 - 입·퇴사시 보안관리 : 입사시 타 회사 영업비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 <u>서약서</u> 징구(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 지의무,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의무 등 부과), **퇴사시 회사의 정보 반환** 요구
 - 직원 간 정보공유 제한 : 직원들이 회사 내 정보를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음. 업무 범위별 정보 공유가 적절
 - 보안교육: 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함(정기적 보안교육이 가장 적절)
- 문서 관리
 - 주요문서는 별도 **보관·권한 있는 자만** 볼 수 있도록 하며,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 관리
 - 영업비밀·등급부여에 대한 등급부여: "confidential", "비밀", "대외비" 등 자료의 등급을 분류. 도장을 찍거나 해당 문서 작성 시 머리말·꼬리말 등에 자동으로 문구가 삽입되도록 설정(다만, 모든 문서에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선별하여 표시할 것)
- 시스템 관리 및 접근·출입 통제
 - 영업비밀·중요정보가 보관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업무별·직급별로 시스템 접근권한 분류 등)
 - 외부 이메일 사용금지, 외부 네트워크 차단, USB 등 외부저장매체 사용금지조치 등
 - 업무 특성상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하다면 지속적 감시 필요(인가된 USB만 사용하도록)
 - 영업비밀·중요정보 보관장소에 외부인·무권한자의 출입 통제·방지



● 특허인가 영업비밀인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6 판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가합18706판결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 이 사건 정보가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되도록 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영업비밀로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특허공보에 게재됨으로써 이 사건 정보는 비공지성을 상실"

➤ 특허로 출원하여 보호받을 것인지, 영업비밀로서 보안 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고시한 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 :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전반

형법(업무상 배임죄, 절도죄 등)

보호대상 : 영업비밀 특정 및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경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할 경우 고려 (고의적 무단 반출 등)

●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서비스 개요

•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3자 시점확인 서비스

WHAT	영업비밀에서 추출한 고유 저자지무(Hach간)
WHEN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
WHO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 ❖ 전자지문(SHA-256 bit Hash값): 전자문서의 고유한 전자값으로, 같은 데이터로부터는 같은 결과 법적권 → 오나 정보가 조금만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증명 가능
 - (서비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증명)
 - (기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특장점

- 원본 제출 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하여 비밀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
-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일(워드, 한글, 이미지, 캐드파일, 동영상 등) 지원
- 온라인 상으로(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등)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쉽게 이용 가능

활용사례

- 선사용권 주장시: 타사와의 분쟁시 연구자료의 선사용권 주장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
- 기술자료 제공전 : 기술제휴, 이전 등에 따른 자사의 핵심 기술자료 요구시 대비책으로 활용
- 모인출원 대비용 : 기술탈취에 따른 모인(횡령) 출원 발생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활용
- 경진대회 출품전 :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시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활용
- 직원이직 앞두고: 핵심 기술자료 취급 직원의 이직시 타사로의 기술 유출 대비책으로 활용

●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이란

■ 체계적 영업비밀 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시스템적으로 비밀자료를 관리하고 그 취급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밀 문서 등록 및 비밀등급 부여, 취급인력 및 권한 설정, 이력 관리, 서약서 관리, 원본증명 서비스 연계 등 영업비밀 관리기능 전반을 구현한 **영업비밀 자료 관리용 시스템**

영업비밀 관리대장 비밀문서 보관함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증거제출

•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시스템 기대효과

- 비용절감 효과
 - 서버장비 도입이 필요 없고, 유지보수 비용 無
 - 500만원 또는 월 15만원으로 이용 가능
- 증빙자료 확보
 - 빠른 압수수색 진행이 가능하도록
 - 비밀관리성 입증을 위한 자료를 단시간에 확보/제출 가능
- 일반자료 관리
 - 영업비밀 자료 외에 사내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수집/공유
 - 문서관리 집중화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
- 직원의식 제고
 - 유출시 소송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직원 인식 전환계기, 유출심리 억제 효과 발생
- ❖ 영업비밀 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와 개인정보보호 - 인터넷 쇼핑몰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인터넷 쇼핑몰의 법적 성격

- 인터넷쇼핑몰이란?
 -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 거래되는 영업장

 - 인터넷쇼핑몰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개별쇼핑몰과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중개업 형태의 e-마켓 플레이스가 있는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 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쇼핑몰 구축, 상품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담당하는 <u>개</u> 별쇼핑몰 창업자에게 적용됨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의 법령상 의미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 이므로 **통신판매**에 해당
 - 전자문서에 의해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가 처리되므로 **전자상거래**에도 해당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u>「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통신</u>판매업 신고 등)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이 모두 적용

- 31 -

● 영업신고 의무

-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함
-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사업초기에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게을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실도 있음(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법적책임이 강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중개방식이든 직접판매방식이든 개시하려면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6개월 동안 판매회수가 10회 미만, 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음(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 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 의무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 약관, 개인정보취 급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의무(전자상거래법 제10조)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함. 다만, 다음 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③ 전화번호·전 자우편 주소,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을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표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작성·공개 의무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해야 함.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 약관의 의미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 약관의 작성 방법
 -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되며, 작성 하더라도 해당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약 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7조).
 -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면책조항, 손해배상의무조항,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조항, 강제채무이행조항, 소비자의 권익제한조항, 의사표시의 의제조항, 대리인의 책임가중조항, 소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 표준약관의 사용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을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은 온라인 판매업자(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포함)와 이용자 간 사용되는 약관임
 - 2014. 9. 19.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강화화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개정하였음

- 34 -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의무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작성·공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내의 다른 화면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이퍼링크)되도록 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④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⑥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⑦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정보 취급방침 작성 유의사항
 - 인터넷 쇼핑몰 가입신청시 받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와 일치
 - 최근 변경된 표준 약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

- 35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의무
 - 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상시 <u>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u>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u>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u>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는 지정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6조의6 지정 및 신고의무 해당 업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등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의무

	СРО	CISO
조항	제27조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45조의3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임명의무 부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격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 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시행령 제13조)	임원급
정식명칭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주요업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 처리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관리·운영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중요 정보의 암호화 등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u>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Q & A

감사합니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

